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 이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383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역자원시설세 개요	2
2. 개정안 검토	4
(1) 개정안의 주요내용	4
(2) 개정안의 검토	5

I. 제안경위

1. 제안자 : 이개호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4. 9. 26.
3. 회부연월일 : 2024. 9.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현행 규정은 킬로와트시(kWh)당 1원을 과세하고 있으나 원자력 발전소의 잦은 사고와 원전 설비의 부실공사가 밝혀지면서 발전소 소재지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민원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킬로와트시(kWh)당 과세 단가를 2원으로 상향하여 원자력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 환경개선과 지역발전 사업에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원자력발전의 안정적 가동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6조).

Ⅲ. 검토의견

1. 지역자원시설세 개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¹⁾ 부과되는 목적세로 특별시·광역시·도세임.

지역자원시설세는 ① 특정자원분, ② 특정시설분, ③ 소방분으로 구분되며, ① 특정자원분은 다시 i) 발전용수분, ii) 지하수분, iii) 지하자원분으로, ② 특정시설분은 iv) 컨테이너분 v) 원자력발전분, vi) 화력발전분으로 구분됨.

[지역자원시설세 구분]

구 분		과세대상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용수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
	지하수	먹는 물, 목욕용수, 그 밖의 용수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출항하는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kw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및 선박

1) 「지방세법」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이 중 ① 특정자원분 및 ② 특정시설분은 1992년 지역개발세(발전
용수분·지하수분·지하자원분·컨테이너분)로 신설된 후 2005년 원자력
발전분, 2011년 화력발전분이 추가되었고, ③ 소방분은 1961년 공동
시설세로 신설되었으며,

2011년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가 통합되어 현재와 같이 지역자원
시설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2. 개정안 검토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현행 발전량 킬로와트시(kWh)³⁾당 1원에서 2원으로 2배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146조 제2항제2호).

현 행	개 정 안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²⁾ ① (생 략)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 ③ ~ ⑤ (생 략)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2원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지방세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그림 생략)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

(2) 개정안의 검토

지역자원시설세는 부정적 외부효과(특정인의 행위가 제3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발생시킨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이를 감소시키거나 피해를 보전(외부효과의 내부화)하는 기능을 가짐.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상응하는 세율을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은 유사 사례 및 발전사업자의 부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우선 현행법상 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2가지만 존재하며, 두 세목은 각각 2006년, 2014년에 세율을 킬로와트시(kWh)당 0.5원, 0.15원으로 하여 신설된 후 2015년에 각각 1.0원, 0.3원으로 2배 인상되었는데,

이후 화력발전은 2024년에도 0.6원으로 2배 인상되었으나 원자력발전은 화력발전보다 8년 먼저 신설된 세목임에도 추가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3) 전력량의 실용 단위로서 1킬로와트(kW)의 전력으로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을 의미함.

[원자력발전·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변동]

구분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2006년 (2005.12.개정)	0.5원/kWh (신설)	-
2014년 (2011.3.개정)		0.15원/kWh (신설)
2015년 (2014.12.개정)	1.0원/kWh (2배 인상)	0.3원/kWh (2배 인상)
2024년 (2021.12.개정)		0.6원/kWh (2배 인상)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행정안전부는 ①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3분기 이후 전기요금이 동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자원시설세율을 인상하면 발전사업자의 재무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② 이는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한편, 개정안은 부칙으로 시행일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① 세율의 개정은 납세의무자 및 과세관청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시행일을 “0000년 1월 1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⁴⁾

4) 「법률 제1295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납부는 발전행위(「지방세기본법」⁵⁾상 납세의무성립시기) → 신고 → 납부의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므로 기존 입법례⁶⁾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또는 발전하는 경우) 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333

-
- 「법률 제186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2. 제14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 5)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0. 지역자원시설세
 마.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 6) 「법률 제1295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률 제186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